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5. 4. 4.>

근무실적 보고서

성명		생년월일	
면허(자격)종별		면허(자격)번호	
근무처		직책	
근무실적			

「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월분 근무실적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